

입법정책정보

-제11호-





| 시비카테카지, 레카카산지시워시아시 시키철도제 모스자 다 스 시트크 그런 키버 |
|--|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

목차

| I . 상위법령 제·개정1 |
|--|
|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1 |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중진법 시행령4 |
| 3. 국민건강중진법 시행규칙9 |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13 |
|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cdots 15$ |
|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19 |
| 1.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19 |
| 2.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2 |
| Ⅲ . 자치법규 참고정보 24 |
| Ⅳ . 최신 외국 입법정보 28 |

│ 상위법령 제·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1. 20.] [국토교통부령 제1276호, 2023. 11. 20.,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건설기계 관리업무 관련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 관련 전산자료 1건당 10원 등으로 수수료 금액을 정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건설기계 정비명령을 받은 후 실제로 정비를 받지 않고 정기검사를 신청함으로써 정비를 기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비명령을 받은 후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정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 주요내용

제31조(정비명령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 1.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
- 2.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정비명령서
- 3.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정비확인서(법 제16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 ⑥ (생 략)

제93조(수수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23과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9호의4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관계법령에서 자료 통보를 의무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11.] [대전광역시조례 제6082호, 2022. 8.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를 둘 것. 이 경우 총 정비요원의 5분의 1 이상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 3. 제2호 후단에서 정한 정비업종별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최소 정비요원의 수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최소 정비요원의 수에 포함할 수 있다.
-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따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72호, 2023. 11. 16.,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의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9414호, 2023. 5. 16. 공포, 11. 17. 시행)됨에 따라, 이 영 중 특별교통 수단의 운영 범위 및 운영방법과 관련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위임 근거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 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 1) 해당 시 · 군의 관할구역 안
 - 2)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가)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군
 - 나)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 다)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라) 해당 시·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없는 시·군 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 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 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 는 지역
-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시행 2021. 12. 29.] [대전광역시조례 제5771호, 2021. 12. 29.,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관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중진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대전광역시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평가
 -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사항
 - 3.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사항
 - 4.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 5.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 원회를 둔다.
 - 1. 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 3.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의2(이동편의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대상시설의 점검 시기 및 방법 등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의3(점검 결과 반영)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점검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연 4시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삭제 <2021.12.29.>
- 제7조(저상버스 운영 활성화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상버스등(이하 "저상버스" 라 한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등의 사업추진
 - 2. 운행정보제공, 홍보 및 교육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 3. 저상버스운행계획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② 시장은 운행하려는 전체버스를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버스안내장치 도입)** ① 시장은 버스안내장치("버스안내장치"란 버스자동안내방송과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교통사업자가 버스안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버스안내장치 운영)** ① 시장은 버스안내장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과 연계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버스안내장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통사업자, 운전 자 및 이용자 등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교통약자가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버스안내장치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 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 ③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 2.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의
 - 3. 특별교통수단 운행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상담과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 버스정류소 등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접근 편의 제공 및 유지
 -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 서 목적지까지 운행 하고,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운영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 4. 임산부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 운 사람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 ② 특별교통수단의 단계별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대전광역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제13조의 특별교 통수단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운행, 이용요금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의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대 상시설이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삭제 <2021.12.29.>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5조의2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 2. 제6조에 따른 교육
 - 3. 제10조에 따른 센터 관리 및 운영
 - 4.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제1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관리 및 운영
 - 5.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보건복지부령 제980호, 2023. 11. 29.,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 개정, 2023. 12. 2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 기반 조성 현황,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연구 단체 등과의 협력 정도,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 수준 등이 포함된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건강도시지표를 간행물 발간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게 널리 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주요내용

제3조의5(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 ① 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건강도시지표(이하이 조에서 "건강도시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이하 이 조에서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 기반 조성 현황
- 2.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과의 협력 정도
- 3.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참여 수준
- 4. 그 밖에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지표를 간행물 발간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게 널리 보급해야 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4.] [대전광역시조례 제6040호, 2023. 7.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 도록 주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모든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책무)**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건강도시기본계획) 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 3.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 4.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5.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건강도시 가치 제고 사업
 - 2. 건강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3. 건강도시 지표의 개발 · 관리

- 4.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 5.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탁)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건강도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건강도시위원회 설치)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3.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위원은 시민체육건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다.
 - 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전문가
 - 2.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7.14.>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삭제〈2023.7.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삭제〈2023.7.14.〉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중앙행정기 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7조(포상)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8.] [대통령령 제33889호, 2023. 11. 28.,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함.

○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 3. (생략)

- 제11조의7(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11조의8(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1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기관"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19조의4(감독)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 2. 회원의 가입 · 탈퇴와 회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협회 및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공공이용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시행 2023, 2, 24.] [대전광역시조례 제5975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공이용시설"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의 시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 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지원) ① 대전광역시장은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업비 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54호, 2023, 11, 7.,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및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18호, 2023. 5. 16. 공포, 11. 17.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다른 금융회사에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의 요청서류 제출 기간을 피해자의 신청서류 제출 기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 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 번호,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금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피해금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④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영업일을 말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

- 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에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
 -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 나.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기간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목의 서류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용) 및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 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 나.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조례」

[시행 2023. 2. 24.] [대전광역시조례 제5969호, 2023. 2.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준법지원센터, 금융감독원

- 대전충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대전광역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시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민은 대전광역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함은 물론,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통합 분석보고서 및 통합 홍보물 작성
 -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캠페인
 -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침 개발 및 보급
 -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 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과학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경제과학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 2. 대전지방경찰청장
- 3. 대전광역시경찰청장
- 4.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 5.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Ⅱ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시행 2023. 11. 10.] [광주광역시조례 제6303호, 2023. 11. 10., 제정]

□ 제정이유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의 적정성·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공모사업을 계획에 따라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지역발전을 위해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2. "총괄부서" 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담당부서" 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주관부서 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1. 공모사업의 적법성
 -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 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 2. 사업 타당성
 - 가. 국정 및 시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 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
 -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
 - 4. 재정협의
 - 가. 국비, 시비 등의 재원별 비율
 - 나. 시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
 - 5. 사업효과
 -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 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하다.
 - ⑤ 담당부서는 시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1. 시 및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사업
-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다.
- ③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1. 9.] [인천광역시조례 제7157호, 2023. 11. 9., 제정]

□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공기관"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을 말한 다.
- 2. "소방관서" 란 공공기관이 위치한 장소에 설치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9 조에 따른 관할 소방서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를 말하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적극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훈련 및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게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방훈련의 방법, 규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방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과 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훈련 기자재 구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과 교육에 사용하는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Ⅲ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3-0367 / 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 의뢰안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제·개정사항을 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제·개정사항을 의회에 사후 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11. 5. 20. 의견제시 11-0022,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16쪽 참조).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더라도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제·개정사항을 지방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르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을 제약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그런데 규칙의 제 · 개정사항을 지방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고 하여 보고사항에 대

하여 의회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규칙의 제·개정사항을 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이나 집행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9. 27. 의견제시 23-0375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u>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u>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보 게재 시 주민 일반에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 보고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점을 조례입안 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3-0143 / 요청기관: 전라남도]

□ 의뢰안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관련)

□ 주요내용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정의하는 등 같은 항 제 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영구임대주택(제1호), 국민임대주택(제2호), 행복주택(제3호), 통합공공임대주택(제3호의2), 장기전세주택(제4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5호),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제6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제7호)을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입주자격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하는 등 같은 규칙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영구임대주택(제14조), 국민임대주택(제15조), 행복주택(제17조), 통합공공임대주택(제17조의2), 장기전세주택(제18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9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제20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제21조)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하여 각각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 자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과 관련하여 그 세부 사항만을 시·도지사 등이 정할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다른 내용의 입주자 자격을 조례로 정할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과 다른 내용의 입주자 자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외국 입법정보

사우디아라비아, 「특허법」 개정

□ 주요내용

사우디아라비아 내각은 2023년 10월 6일 「2004년 특허와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와 식물종과 산업디자인법」("특허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04년 6월 17일에 제정된 법률로, 총 6절 6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새 식물종 및 산업디자인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및 이슬람 문화 대표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대형 중장기국가 발전 프로젝트인 '비전 2030(Saudi Vision 2030)' 추진 이래 국제적 변화 및 추세에 따라 지식재산가치를 확립하고 관련 분야의 발전을 장려하고자 각종 관련규정을 정비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 법의 제2조 "정의"조항에 '1999년 산업디자인의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한 정의규정이 추가되었고, 제18조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특허출원 시 출원접수 이후 다음 해부터 매년 출원인에게 부과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헤이그 협정에 따라 접수된 국제산업디자인 출원에 대한 연간수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제출원 접수일부터 매 5년마다 부과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제19조의 규정도 개정되어, 산업디자인 인증서 보호기간은 신청일부터 기존의 10년에서 15년으로 개정되었고, 제60조의2 조항도 신설되어 산업디자인 등록을 위한 국제출원은 헤이그 협정 및 그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헤이그 협정에 따라 등록된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에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되어 헤이그 협정에 따라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디자인 등록 시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산업디자인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이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에 관련하여 법률 하단에 작성된 표의 내용도 일부 개정되었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우디아라비아, 「특허법」개정", 공공누리 제1유형, 2023.11.28.